

2026년 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6조의2에 따라 공간정보 분야 중소·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창업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6월 19일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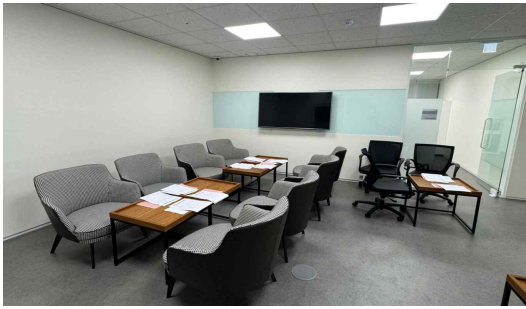
1

개요

- ☐ (목적) 공간정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을 통한 창업생태계 활성화
- ☐ (모집기간) 2026. 6. 19.(금) ~ 7. 12.(일)
- ☐ (신청대상) 공간정보 우수기술(아이디어)을 보유한 창업기업(7년 이내)
- ☐ (지원내용) 창업공간 무상제공, 국내외 판로, 기업홍보 등 창업프로그램 제공
- ☐ (모집규모) 총 4팀

구 분		4인실	6인실	8인실
모집규모		1	2	1
입주기간		1년(평가에 따라 최대 3년간 입주 가능)		
입주부담금		무상(임차료, 관리비 등) * 예산상황에 따라 일부 관리비 부담할 수 있음		
필수조건	상주인원	2인 이상	3인 이상	4인 이상
	기타	- 센터 內 사업자등록 필수(본사, 기업부설연구소, 지사 등 형태 무관) - 필수조건 미이행 시 선정취소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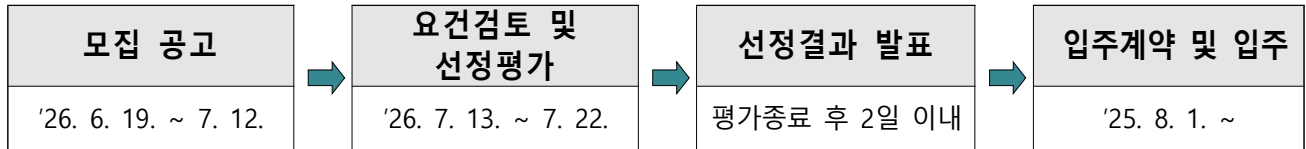
<참고> 입주공간 개요

센터명	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			
위치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3(판교 글로벌비즈센터), 업무동 5층			
입주공간	10인실 1, 8인실, 6인실 2, 4인실 3, 8인실 4, 라운지 1, 공용 회의실 3, 탕비실 1			
시설사진 (공용공간, 모집공간)				
	센터입구	라운지		
				
	복도	회의실 1		
				
	5-11호(면적: 43.75㎡ / 8인실)	5-17호(면적: 28.48㎡ / 6인실)		
				
	5-18호(면적: 26.63㎡ / 4인실)	5-19호(면적: 29.23㎡ / 6인실)		

2

추진일정 및 신청방법

□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모집규모 미달 시 추가모집할 수 있음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상생누리플랫폼, <https://www.winwinnuri.or.kr>)

* 프로그램명: 2026년 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

□ (제출서류) 필수 및 기타서류 각 1부

필수	기타(해당 시)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한글, pdf 모두 제출) - 발표자료(10분 분량, pdf파일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 최근 3년간 매출액 증빙자료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등)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법인등기부등본 - 기타 증빙자료 등

□ (문의처) 유선: 한국국토정보공사 경영성과처 063-713-1121

이메일: startup@lx.or.kr

카카오톡채널: 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

3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 평가기준

- 사업역영이 공간정보와 관련성이 없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발표평가 진행(발표 10분, 질의 10분)
 - 발표자료에는 평가항목에 대한 내용을 필수 기재
-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모집규모인 4개팀 선정
 - 평가점수: 최고점수,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적용
 - 평균점수 70점 미만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최종 선정기업이 입주를 포기할 경우 후순위 고득점자를 추가로 선정

□ 평가항목

- 기술성, 사업성, 사업수행역량, 입주공간 활용도 총 4항목 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점)	평가요소
기술성(40)	적합성(15)	■ 공고내용에 적합한 창업기업인지 여부 ■ 공간정보 해당여부
	혁신성(15)	■ 신규성 또는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 기술아이템의 모방 가능성 및 방지전략 여부
	적정성(10)	■ 성과목표 및 추진방법의 적정성 ■ 성과목표의 실현가능성
사업성(30)	사업화계획(15)	■ 목표시장의 규모 또는 성장 가능성 ■ 구체적인 사업화 전략의 유무(Exit 계획 포함)
	성장가능성(15)	■ 신규시장 진출 가능성 및 성장 가능성 ■ 글로벌 진출전략의 구체성 및 체계성
사업수행 역량(20)	팀원 구성(10)	■ 팀원의 적절한 역할 배분 여부 ■ 공간정보 전문가 인력 보유현황
	전문성(10)	■ 해당 분야의 전문성 보유 여부 ■ 장기적 사업플랜 수립 여부
입주공간 활용도(10)	활용도(10)	■ 입주사무실 활용계획의 적정성 ■ 입주사무실 상주인력 보유여부
가점사항	해당기업(2)	■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해당여부(증빙자료 제출 필수)

4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창업자로서, 모집 공고일 (2026.6.19.) 현재 창업 7년 이내인 자

창업기업 인정기간 : 동 공고일 기준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소지한 사업자 중 최초 등록한 사업자 기준(개인사업자, 법인기업의 업종과 관계없이 7년 이하로 한정)
-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신청하는 대표자는 제시된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대표자 전원이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신청(지원)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5

유의사항

- 신청 및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선정된 자는 동 공고문 및 지침,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창업기업에게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등의 조치 가능

- ☐ 최종 선정된 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 최종 선정된 자는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 최종 선정된 자는 입주계약 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끝.